

「2021년 체육발전유공」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5. 24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1. 포상 목적

- 체육의 날(10.15.)을 기념하여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·지도자 및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 도모

2. 포상 규모

- [포상종류] 체육훈장(1~5등급)*, 체육포장
 - * 1등급 청룡장, 2등급 맹호장, 3등급 거상장, 4등급 백마장, 5등급 기린장
- [포상수량]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수요조사 후 추천제한사항 조사, 공개검증, 공적심사 등을 통해 결정, 행안부 협의
 - * 최종 수량은 행안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추천 대상자

- '20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·지도자 및 국가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서 「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」을 충족하는 자

4. 추천 방법

- 추천자: 체육단체(기관), 개인(본인 추천 포함) 등 제한 없음
- 제출기한: **2021. 6. 25.(금)**
- 제출처: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발전유공 포상 담당

- (대한체육회) ☎ 02-2144-8170 / ✉ blee@sports.or.kr

- (대한장애인체육회) ☎ 02-3434-4567/ ✉ all@koreanpc.kr

- 제출방법: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고 참고
- 제출서류: ①공적요약서, ②공적조서, ③정부포상 동의서, ④추천 제한사항 조회 목록, ⑤1등급 훈장 협의서, ⑥기타 공적 증빙자료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외국인의 경우 국·영문 공적조서, 이력서(상세 인적사항, 현지주소, 연락처, 학력, 경력사항 등) 첨부 *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

【 제출서류 작성요령 】

※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
제 출 서 류	작 성 요 령
1. (붙임3) 공적요약서 2. (붙임4) 공적조서 3. (붙임5) 정부포상 동의서 4. (붙임6)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5. (붙임7) 1등급 훈장 협의서 6. 기타 공적 증빙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■ 소속, 직위 기재 시 전·현직을 구분하고 '21년 9월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적요지 및 공적내용은 2020.12.31.기준으로 작성 ■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■ 공적내용은 반드시 2,00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, 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*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/월/일까지 기입하고,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(최근순) ■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* 행사명, 포상 훈격,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적내용은 2020.12.31 기준으로 작성하고,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*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, 추상적 표현 삼가,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

5. 추진일정

-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: 5.24.(월) ~ 6.25.(금)
 - (제출처)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발전유공 포상 담당
-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: 7월 중순
- 공개검증 및 범죄·결격사유 조회 : 8월
-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훈대상자 추천 : 9월 중순
-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: 10월 중
- 2021 체육발전유공 전수식 : 10.15.(금) 예정

6.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7. 재포상 금지: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
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8. 추천 제한

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② 형사처분

- ①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③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동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동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②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
③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⑤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③ 다만,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⑥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①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②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⑦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⑧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9. 기타 유의사항

-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('21.10월)
-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,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
-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·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,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
-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, 감사원·검·경의 조사·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
- 외국인은 관계부처(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,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)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, 추천 시 국·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
- 상훈 관계법령과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